■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 <신설 2014.3.14>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앞쪽)

1. 기본사항

① 법인명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②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220-82-66295
③ 대표자 정보형	④ 기부단체구분 기부금대상 민간단체
⑤ 전자우편주소 gjlabor1113@gmail.com	⑥ 사업연도 2021년
⑦ 전화번호 062-961-9855	⑧ 기부금지정연도 2017년
⑨ 소재지 광주광역시 광산구 왕버들로 322번길 6, 209호	

2. 기부금의 수입·지출 명세

(단위: 원)

⑩ 월별	⑪ 수입	⑫ 지출	⑬ 잔액	월별	수입	지출	잔액
전기이월	27,307,481		27,307,481	8월	8,526,729	3,581,218	13,489,651
1월	2,040,000	14,407,388	14,940,093	9월	1,280,000	3,613,494	11,156,157
2월	1,660,000	3,377,779	13,222,314	10월	1,430,000	3,416,851	9,169,306
3월	10,060,505	6,862,926	16,419,893	11월	1,470,000	2,384,340	8,254,966
4월	1,550,000	5,405,435	12,564,458	12월	9,256,329	6,110,243	11,401,052
5월	1,310,000	2,801,283	11,073,175	합계	68,681,778	57,280,726	11,401,052
6월	1,440,734	2,386,822	10,127,087	차기이월	-	-	
7월	1,350,000	2,932,947	8,544,140				

3. 기부금 지출 명세서(국내사업)

(단위: 원)

⑭ 지출월	⑮ 지급목적	⑯ 지급건수	⑰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⑱ 금액
1월	교육사업/대외사업/운영비/인건비	57	윤혜경 외	14,407,388
2월	교육사업/대외사업/운영비/인건비	25	은태욱 외	3,377,779
3월	교육사업/대외사업/운영비/인건비	21	하인호 외	6,862,926
4월	교육사업/연구사업/운영비	27	정다운 외	5,405,435
5월	교육사업/대외사업/운영비	16	드림디포 외	2,801,283
6월	교육사업/대외사업/운영비	10	김설 외	2,386,822
7월	교육사업/대외사업/운영비	11	보증보험 외	2,932,947
8월	교육사업/일반사업/운영비	10	방진관 외	3,581,218
9월	교육사업/일반사업/대외사업/운영비	12	이연주 외	3,613,494
10월	교육사업/일반사업/운영비/인건비	11	광주여성노동자회 외	3,416,851
11월	교육사업/대외사업/운영비/인건비	14	봄빛디자인 외	2,384,340
12월	/교육사업/운영비/인건비	20	광주ngo 외	6,110,243
⑲ 연도별	⑳ 지급목적	㉑ 수혜인원	㉒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2021				
합 계				

4. 기부금 지출 명세서 (국외사업)

(단위: 원)

㉔ 지출월	㉕ 국가명	㉖ 지급목적	㉗ 지급건수	㉘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㉙ 금액
㉚ 연도별	㉛ 국가명	㉜ 지급목적	㉝ 수혜인원	㉞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㉟ 금액
합 계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작 성 방 법

1. 기본사항 : ① ~ ⑨란에는 기부금 단체의 기본사항을 적으며 ④ 기부단체 구분은 국내지정기부금단체, 해외지정기부금단체, 한국학교(「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5), 전문모금기관(「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6), 공공기관등(「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7)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2. 기부금의 수입・지출명세
- ⑩란에는 과세기간과 관계없이 1월부터 12월까지를 차례대로 적습니다.
- ⑪란과 ⑫란은 월 누계액을 적습니다.
- 합계란은 1월부터 12월까지의 전체 수입 및 지출금액을 적습니다.

3. 기부금 지출 명세서(국내사업)
- 국내사업 관련 ◯◯지원사업(장학금지급 등), 일반관리비, 기금조성비(정기예금 또는 적금 등), 그 밖의 비용(구체적인 내용 기재) 등 지출월별, 지급목적별로 지출명세서를 작성합니다. 다만, 해당 연도에 매월 같은 목적으로 동일한 사람에게 유사한 금액을 지급한 비용은 ⑭ 지출월란에 적지 않고 ⑲ 연도별란에 적을 수 있습니다.
- ⑲란은 연간 지급목적별 지출명세를 작성합니다. 다만, 1개 단체에 연간 1천만원 이상 지급한 경우 해당 단체명, 지급목적, 수혜인원, 금액을 별도로 적습니다.
- ㉑란 수혜인원은 연간 지급한 실인원을 적습니다. 예시) 10명에게 10만원씩 2회 장학금을 지급한 경우 수혜인원은 10명으로 적습니다.

※ 예시(장학금 지급: 10명에게 10만원씩 1월, 2월에 각각 지급, 복지단체 지원: A 복지단체에 2월에 1,000만원, 1회 지원(수혜인원 50명))

지출월	지급목적	지급건수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금액
1월	장학금 지급	10	김우수 외	1,000,000
2월	장학금 지급	10	김우수 외	1,000,000
2월	복지단체 지원	1	A복지단체	10,000,000
⋮	⋮	⋮	⋮	⋮
연간	지급목적	수혜인원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금액
2013년	장학금 지급	10	김우수 외	2,000,000
	복지단체 지원	50	A복지단체	10,000,000
합 계		63		12,000,000

-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합니다.
- 대표 지급처명은 지출월별, 지급목적별로 구분된 지급처 중 가장 큰 대표 지급처를 적으며,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란으로 두되, 그 지급금액과 지급내용은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4. 기부금 지출 명세서(국외사업)
- 국외사업이 있는 단체는 국가별 지출명세를 지출월별, 지급목적별로 지출명세서를 작성합니다.
- ㉚란은 해당 연도의 국가별, 지급목적별 지출명세를 작성합니다. 다만, 1개 단체에 연간 1천만원 이상 지급한 경우 해당 단체명, 지급목적, 국가명, 수혜인원, 금액을 별도로 적습니다.
-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합니다.